
대관규정

대 관 규 정

제정	2000.	7.	1
개정	2001.	3.	16
개정	2002.	2.	2
개정	2002.	11.	18
개정	2003.	10.	16
개정	2004.	12.	21
개정	2006.	3.	24
개정	2006.	7.	19
개정	2007.	3.	29
개정	2007.	9.	17
개정	2007.	12.	17
개정	2008.	3.	26
개정	2010.	8.	19
개정	2011.	9.	19
개정	2012.	9.	6
개정	2012.	11.	22
개정	2013.	3.	15
개정	2013.	12.	26
개정	2014.	6.	12
개정	2014.	10.	16
개정	2015.	8.	27
개정	2016.	3.	28
개정	2017.	12.	26
개정	2020.	12.	23
개정	2021.	7.	29
개정	2021.	12.	27
개정	2022.	12.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회관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11.18, 2004.12.21)

1. 기본시설 : 세종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S씨어터, 세종체임버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2관, 한글갤러리 및 기타 부속시설 (개정 2001. 3.16, 2002. 2. 2, 2006.3.24, 2006.7.19, 2007.3.29, 2007.12.17, 2010.8.19, 2012. 9. 6, 2014.10.16, 2017.12.26., 2020.12.23., 2021.7.29., 2021.12.27.)
- 2 부대시설 : 데크플라자 옥외 공간과 기타 부속시설(개정 2002.2.2, 2006.7.19)
- 3 삭제(2004. 12. 21)

제3조(대관신청) ① 제2조의 시설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를 회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간은 회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정기신청기간 내에 접수한 대관신청의 심사승인 후 잔여 일정 발생 및 대관 취소 경우

에는 수시로 대관신청을 추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대관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대관심사위원회) ① 대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3.12.26, 2015.8.27)

② 제3조 제3항 정기 및 수시대관시 위원장을 심사당일 외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1.9.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5조(대관승인) ① 사장은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안에 이를 심사, 대관승인 가부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대관계약서는 내규로 정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 회관 공연장에 대한 공연대관의 경우 사용시간을 공연○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까지로 하고 중간휴식 포함 최대 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② 공연장의 준비 및 철수대관은 오전9시부터 밤10시까지 내에서 1회당 기본 4시간 사용 가능하다. (신설 2020.12.23.)

③ 회관 미술관 대관의 경우, 사용시간은 10:30~20:00을 원칙으로 하며, 회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회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3.)

④ 제1항~3항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 해당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시행 내규에 따라 초과대관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3.)

⑤ 이외 세부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신설 2020.12.23.)

제7조(사용료 등) 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의 납부 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며, 회관 시설 중 공연과 관련되지 않는 연습대관과 부속시설 사용시의 대관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과 부대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내규로 정한다.

④ 삭제(2008. 3. 26)

⑤ 삭제(2008. 3. 26)

⑥ 재해, 감염병 기타 불가항력적인 국가적 상황의 경우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료 특별감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관 외부 환경(대규모 집회 등)으로 인한 관객 입장 및 공연지연 등으로 대관사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장방침으로 특정 공연의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0.12.23.)

제8조(입장권의 발행) 대관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 특례) ① 삭제(2008. 3. 26)

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법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납부한 계약금 중 일부를 다음의 비율로 반환한다.(개정 2006.3.24, 2006.7.19, 2007.12.17, 2008.3.26, 2015.8.27., 2017.12.26., 2020.12.23.)

가.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미술관

해지시점 대관기간	사용예정일로부터 120~17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180~23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240~29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300일 이상 전
1일~7일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납부한 계약금 중 60%	납부한 계약금 중 80%	납부한 계약금 중 100%
8일~14일	반환 안함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납부한 계약금 중 60%	납부한 계약금 중 80%
15일~27일	반환 안함	반환 안함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납부한 계약금 중 60%
28일 이상	반환 안함	반환 안함	반환 안함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나. 세종채임버홀/기타

사용예정일로부터 120~17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180~23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240~29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300일 이상 전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납부한 계약금 중 60%	납부한 계약금 중 80%	납부한 계약금 중 100%

다. 사용예정일부터 119일 이내 수시대관 승인을 받고 대관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회관에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대관계약금 중 일부를 다음의 비율로 반환한다.

공연장	대관 기간	해지시점 및 반환금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1일 ~ 7일	사용예정일부터 90일~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40%	
	8일 ~ 14일	사용예정일부터 90일~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30%	
	15일 ~27일	사용예정일부터 90일~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20%	
	28일 이상	사용예정일부터 90일~119일 이내/ 반환 안함	
채임버홀		사용예정일부터 60~8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20%	사용예정일부터 90~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30%

라. 수시대관 승인통보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대극장·M씨어터·S씨어터 90일 이내, 체임버홀 60일 이내일 경우 대관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납부한 대관사용료 중 50%를 반환한다.(개정 2017.12.26., 2020.12.23.)

4. 연습실 및 무대시설물 등 대관인 경우 사용 전 취소한 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해당사용료 (개정 2020.12.23.)

③ 회관 측 의 귀책사유로 대관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회관”은 “사용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일정에 대한 사용료 전액과 함께 납부한 대관료(계약금과 잔금포함)에 대하여 아래 표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한다.

가. 정기대관

해지시점 대관기간	사용예정일로부터 120~17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180~23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240~29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300일 이상 전
1일~7일	납부한 대관료의 60%	납부한 대관료의 40%	납부한 대관료의 20%	지급 안함
8일~14일	납부한 대관료의 100%	납부한 대관료의 60%	납부한 대관료의 40%	납부한 대관료의 20%
15일~27일	납부한 대관료의 100%	납부한 대관료의 100%	납부한 대관료의 60%	납부한 대관료의 40%
28일 이상	납부한 대관료의 100%	납부한 대관료의 100%	납부한 대관료의 100%	납부한 대관료의 60%

나. 수시대관

공연장	대관 기간	해지시점 및 반환금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1일~7일	사용예정일로부터 90일~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료의 60%	
	8일~14일	사용예정일로부터 90일~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료의 70%	
	15일~27일	사용예정일로부터 90일~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료의 80%	
	28일 이상	사용예정일로부터 90일~119일 이내 납부한 계약금 전액	
체임버홀		사용예정일로부터 60~89일 이내 납부한 계약금의 80%	사용예정일로부터 90~119일 이내 납부한 계약금의 60%

제10조(회관의 의무)

1. “사용자”와의 대관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사전에 신청한 공간, 시설, 서비스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제공한다.
2. “사용자”의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3. 공연 관객 및 공연 출연제작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및 조치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11조(대관신청제한, 사용취소·제한) ① 회관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신청을 제한한다. (개정 2020.12.23.)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6.3.28)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
4.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행을 선고받았을 때
5.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6.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7. 삭제(2020.12.23.)
8. 삭제(2020.12.23.)
9. 기타 회관의 공연장 운영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개정 2020.12.23.)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사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승인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 졌을때
2. 이 규정이 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3. 이 규정이 정한 기일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회관의 승인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
5. 대관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개정 2016.3.28)
6.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③ 삭제(2020.12.23.)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 대하지 못한다.

제12조의2 (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 제11조(특수장소의 방염)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02. 2. 2)

②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우리 회관 (무대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2. 2. 2, 개정 2012.11.22)

③ 사장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2. 2. 2)

④ 사용자가 우리 회관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2. 2. 2)

⑤ 제4항의 안전점검은 우리 회관 무대안전관리자와 전기실의 입회하에 실시한다.(신설 2002. 2. 2, 개정 2012.11.22)

⑥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장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2002. 2. 2)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회관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회관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입장제한) 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회관의 점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기타 사장이 안전 유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5조(배상책임) ① 회관은 사용자의 제10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3.)

② 사용인은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회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③ 대관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회관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회관과 사전 협의한 후 무대장치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관과 사용자가 책임한계를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20.12.23.)

제16조(적용규정) 이 규정은 회관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시행내규)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00.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 되었거나 사용신청한 자로서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사용하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사용료 및 계약조건은 당해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0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6년도 대관(사용일 기준)은 이전 규정을 적용받으며, 세종체임버홀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7.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 의거 변경된 명칭은 타 내규 등에 일괄 적용한다.

부 칙 (2008.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년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이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0.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 의거 변경된 명칭은 타 규정 및 내규 등에 일괄 적용한다.

부 칙 (2011.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 의거 변경된 사항은 2014년 대관(사용일기준)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사용료 등)은 2015년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사용료 등) 별표1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적용하고, 별표2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적용하며, 단, 별표2 적용 시 별표1은 삭제하며, 이 규정 시행이전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대관료 및 계약조건은 당해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14. 10.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사용시간), 제7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특례), 별표 2는 대관사용일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 이전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대관료 및 계약조건은 기 체결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21.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사용료 등), 별표 2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신규 계약하는 대관 건부터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 이전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대관료 및 계약조건은 기 체결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22. 12.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사용료특례), 제10조(회관의의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신규 계약하는 대관 건부터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 이전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대관료 및 계약조건은 기 체결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1〉 (삭제 2016.1.1)

〈별표 2〉 (신설 2014.6.12, 2015.8.27)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사용료

1. 기본시설사용료 (개정 2003.10.16, 2006.7.19, 2007.3.29, 2007.9.17, 2007.12.17, 2008.3.26, 2013.3.15, 2014.6.12, 2015.8.27., 2017.12.26., 2020.12.23., 2021.12.27.)

○ 공연대관

(단위: 원, 부가세 별도)

구분	분 류	사용료(1회)	초과 30분당
대극장	한국 전통예술	4,500,000	450,000
	클래식 · 발레 · 무용 · 오페라	5,500,000	550,000
	뮤지컬 · 콘서트	9,000,000	900,000
	행사	10,000,000	1,000,000
M씨어터	한국 전통예술	1,100,000	110,000
	공연	1,500,000	150,000
	행사	3,000,000	300,000
S씨어터	한국 전통예술	900,000	90,000
	공연	1,100,000	110,000
	행사	2,200,000	220,000
체임버홀	한국 전통예술	1,000,000	100,000
	공연	1,300,000	130,000
	행사	2,600,000	260,000

○ 준비 및 철수대관

(단위: 원, 부가세 별도)

구분	분 류	기본대관 (4시간)	주간대관 (09시~17시)	종일대관 (09시~22시)	초과 30분당
대극장	한국 전통예술	2,250,000	3,937,500	6,187,500	290,000
	클래식 · 발레 · 무용 · 오페라	2,750,000	4,812,500	7,562,500	350,000
	뮤지컬 · 콘서트	5,500,000	9,625,000	15,125,000	690,000
	행사	6,000,000	10,500,000	16,500,000	750,000
M씨어터	한국 전통예술	550,000	962,500	1,512,500	69,000
	공연	750,000	1,312,500	2,062,500	94,000
	행사	1,500,000	2,625,000	4,125,000	190,000
S씨어터	한국 전통예술	450,000	787,500	1,237,500	57,000
	공연	550,000	962,500	1,512,500	69,000
	행사	1,100,000	1,925,000	3,025,000	140,000
체임버홀	한국 전통예술	500,000	875,000	1,375,000	63,000
	공연	650,000	1,137,500	1,787,500	82,000
	행사	1,300,000	2,275,000	3,575,000	163,000

※주간대관은 9시부터 17시까지 무대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 종일대관은 9시부터 22시까지 무대휴게시간을 제외한 11시간 대관을 의미함.

○ 기타 대관

(단위:원, 부가세 별도)

구분	무대 및 객석(2시간)	객석(2시간)	로비(2시간)
대극장	4,400,000	1,760,000	1,320,000
M씨어터	1,200,000	480,000	360,000
S씨어터	880,000	352,000	264,000
체임버홀	1,040,000	416,000	312,000

※기타 대관은 콘텐츠 촬영 및 제작 목적에 한정한다.

※ 기타사항

1. 삭제(2021.12.27.)
2. 대관일정 중 공연대관 일정 내 주 1일 휴연시에 해당 일에는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그 주 내 추가 휴연이 있는 경우, 공연장 점유에 따른 1일 1회의 공연대관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7.)
3. 15회차 이상 공연하는 전 공연장의 모든 공연에 한하여 주말 및 공휴일의 공연대관료에 20%의 할증을 적용한다. (신설 2021.12.27.)
4. 철야 시간대 (23시~09시) 공연 준비 및 철수는 지양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3.12.26., 2017.12.26., 2020.12.23., 2021.12.27.)
5. 극장과 직원의 안전관리감독을 위해 무대 휴게시간에는 무대를 사용할 수 없으나 사전협의하에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무대휴게시간을 생략하거나 축소하여 운영한 경우는 해당 시간만큼 초과대관료를 부과한다. 단, 주말· 공휴일 공연, 1일 다 회 공연, 마티네 공연의 경우는 생략 또는 축소 운영하더라도 초과대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3. 개정 2021.12.27.)
6. 삭제(2020.12.23.)
7. 기본대관료 포함 사항 (개정 2021.12.27.)
 - 해당 극장 기본 조명, 냉난방
 - 출연자 분장실 및 공통시설 및 공간
 - 하우스 매니저 등 공연장 안내 서비스
 - 기본 기술스태프
8. 콘서트란 대중음악, 재즈, 크로스오버로 분류되는 장르를 콘서트라 한다. (신설 2021.12.27.)

○ 전시대관(개정 2010.8.19, 2012.9.6, 2014.10.16., 2016.3.28., 2021.7.29.) (단위:원, 부가세 별도)

시설명	면 적(㎡)	대관료(1일)	대관료(1주)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관(지상1층)	686	1,024,000	7,168,000	1. 기본 1일 9시간 30분 사용 2. 개관시간 10:00~19:30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2관(지하1층)	609	780,000	5,460,000	
※ 부대설비 및 추가 사용료는 내규에 따른다.				

※ 기타사항

미술관 대관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입장권을 유료로 판매하는 전시의 경우 표와 같이 대관기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할증을 적용한다. 대관기간이 익년도까지 이월된 경우에도 동일 전시로 간주하여 할증을 적용한다.

적용일수	할증율
1일 ~ 30일	기본대관료의 20%
31일 ~ 60일	기본대관료의 30%
61일 이상	기본대관료의 50%할증

2. 부대시설 사용료 (개정 2006.7.19)

시설명	사용료(기준가)	비 고
테크플라자	400,000원	1. 기본 1회 4시간 기준 2. 전기요금 : 실비산정 (한전 전력 요금에 따라 결정) 3. 방송, 영화, CF 제작을 위한 기타 옥외시설(공간) 대관료는 내규로 정한다.
※ 추가 사용료 및 준비(장치), 연습을 위한 대관료는 내규에 따른다.		

3. 부속시설 사용료 (개정 2004.12.21, 2006.7.19, 2007.9.17., 2008.3.26., 2021.12.27.)

(단위:원, 부가세 별도)

시설명	위치	사용료(4시간)	비 고
VIP룸	대극장	1,200,000	대극장 대관단체의 대관일정에 한함
귀빈실	대극장	300,000	대극장, M씨어터, 체임버홀 대관단체의 대관일정에 한하며, 우선순위는 대극장→M씨어터→체임버홀 순으로 함
리허설룸	S씨어터	75,000	-

4. 식재 (2004. 12. 21)

5. 로비 사용 수수료 (신설 2021.12.27.)

(단위:원, 부가세 별도)

구분		수수료	비 고
시설명	사용내역		
대극장	공연 상품 판매	25,000/3.3㎡	공연 1회
	공연 외 프로모션	50,000/3.3㎡	공연 1회
M씨어터	공연 상품 판매	20,000/3.3㎡	공연 1회
	공연 외 프로모션	40,000/3.3㎡	공연 1회
S씨어터	공연 상품 판매	10,000/3.3㎡	공연 1회
	공연 외 프로모션	20,000/3.3㎡	공연 1회
체임버홀	공연 상품 판매	15,000/3.3㎡	공연 1회
	공연 외 프로모션	30,000/3.3㎡	공연 1회